

의안번호	제 107 호
의 결 연 월 일	2018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·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8년 11월 26일

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·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0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8년 11월 26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가. 매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함에 따라 신규사업 발굴, 선정사업의 관리 등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한 실정임.

※ (근거법령)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,
「충청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나.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·운영의 민간위탁안에 대하여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 간 : 위·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(2019. 3. ~ 2022. 3. 예정)

나. 위 치 : 충청북도 내

다. 공간규모 : 센터운영 가능면적(센터장 1, 직원 3명)

라. 위 탁 비 : 2.5억원 정도(2019년, 인건비 1.6, 운영비 등 0.9)

마 수탁기관 : 도시재생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

바. 위탁사무

-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시책 및 신규사업 발굴
- 사업 선정 및 관리(모니터링 등) 지원
-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
- 전문가 육성(도시재생대학 운영) 및 파견
- 주민참여형 교육프로그램 개발, 지원
- 도시재생 홍보 및 소식지 발간
- 시·군 센터와 네트워크 구축, 미설치 시·군의 기반강화 지원

3. 참고사항

가.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·운영계획 : 붙임1

나. 관계법령 : 붙임2

<붙임1>

함께하는 **도민**
일류경제 **충북**

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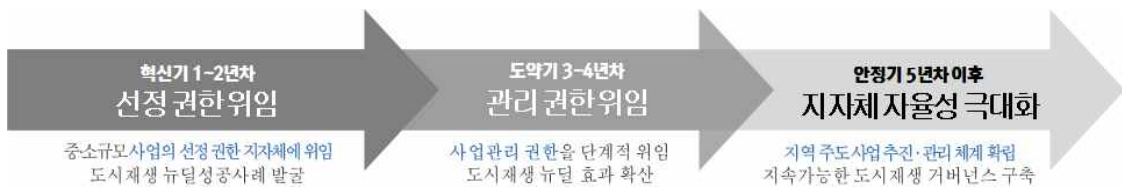
충청북도
건축문화관

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

-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 및 관리하는데 광역지자체의 역할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함

I 필요성

-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매년 선정*하고, 업무 권한(공모선정, 사업관리, 사후관리 등)이 점차 위임됨에 따라 광역도의 업무역량 확충
- * 기존 재생사업 3개소(국비 432억원), '17년 뉴딜 선정 4개소(국비 400억원), '18년 뉴딜 선정 4개소(국비 330억원), '19~'22년 선정 예상 20개소(국비 1,700억원)



- 도시재생 전문가 등에 대한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(소규모 재생사업 등 주민참여사업)
- 시·군 도시재생센터의 전문화와 미설치 시·군의 지원

※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, 조직확충 요구('18. 3. / '18. 9. 국토부)

- 광역센터 설치여부에 따라 광역시·도 배정물량 차등배정 입장
- 11개 시·도 설치 완료(4개 도 포함), 4개 시·도 설치 예정

총계	설치			미설치			비고
	소계	광역시	광역시도	소계	광역시	광역시도	
17	11	7	4 (경기 강원 경남 제주)	6	1	5	울산 충남 전북 경북 설치 검토중

⇒ 매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함에 따라 신규사업의 발굴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필요

II

지원센터 구성(안)

○ 설치근거 : 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’ 제11조,
 ‘충청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’ 제4조

○ 센터의 주요기능

-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시책 및 신규사업 발굴
- 사업 선정 및 관리(모니터링 등) 지원
-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
- 전문가 육성(도시재생대학 운영) 및 파견
- 주민참여형 교육프로그램 개발, 지원
- 도시재생 홍보 및 소식지 발간
- 시·군 센터와 네트워크 구축, 미설치 시·군의 기반강화 지원
 (3개 시 설치, 8개 군 미설치)

○ 운영방법 검토

운영방법		장 점	단 점
행정직영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고용 안정성에 따른 지속성 확보 • 예산확보의 안정성 • 의사결정의 신속성·효율성 • 정책의 효과적, 효율적 집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민 및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부족 • 단기간의 성과 도출에 따른 실질적 도시재생 불가 • 도시재생 혁신성 부족
민간위탁	공기관 (연구원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문성 및 지속성 확보 가능 • 인력 및 조직 등 독립적 운용 가능 • 공공기관 등 대내외 네트워크 확보 • 민관의 갈등해소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료화될 가능성 존재 • 예산집행의 유연성 부족 • 행정기관의 하위조직으로 인식
	민간 (대학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민 및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용이 • 통합적이며 유연한 예산집행 • 혁신적 사업모델 발굴 제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분 및 직업적 안정성 부족 • 사업종료 후 지속가능성 부족 • 전문가 능력검증 곤란 및 집행력 부족
재단설치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분 및 직업적 안정성 • 다양한 의견수렴용이 • 주민역량강화 등 업무추진 효율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혁신성 부족, 관료화될 가능성 존재 • 예산집행의 유연성 부족 • 사업추진 집행력 부족

※ 11개 시·도 광역센터 설치(민간위탁 9, 재단 2)

⇒ 기관의 전문 연구위원 활용 및 센터의 자율성, 독립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민간위탁(공기관, 민간) 운영이 타당

III

세부 운영계획

- 위탁기간 : 위·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간(2019. 3. ~ 2022. 3.)
 - ※ **협약종료 전**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, **향후 운영방안 별도 검토**
- 수탁대상 : 도내 연구기관, 대학, 법인 중 공모 선정

◆ (근거규정)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- 민간위탁 : 도지사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·단체, 기관, 개인에 맡겨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
- 수탁기관 선정 : 공개모집 원칙,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 선정
 - * 인력·기구, 재정부담 능력, 시설·장비, 기술보유 정도, 책임능력·공신력,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선정 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

- 위 탁 비 : '19년도 250백만원
 - 인건비 158, 집기류 및 운영경비 52, 사업비 40
- 조직구성 : 센터장 1명, 팀장 1명, 팀원 2명
- 추진절차



<붙임2>

□ 관련 법령

【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】

제11조(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)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1.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
2.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3.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
4.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그 밖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【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】

제14조(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)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·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승인, 시·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·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③ 전략계획수립권자,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한다.

1.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 2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밝고,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방식,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5조(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)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
2.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

【충청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】

제4조(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1.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지원
 2. 시·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와 조정
 3. 시·군의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, 컨설팅 등의 지원
 4.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주관
 5.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지원
 6. 도시재생 관련 홍보
 7.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- ⑤ 도지사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,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【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】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민간위탁”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목과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수탁기관”이란 도지사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
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,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- ③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.
- 제6조(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) ①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“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 위촉 시에는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은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,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 수의 1/2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- ⑥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【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】

제2조(동의안의 제출) ① 충청북도지사는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안을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.

제3조(수탁기관 선정절차)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충청북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탁사무 해당부서(이하 “소관부서”라 한다)에서 구성·운영한다.

② 조례 제5조제2항의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제6조(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)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·업무주관실·국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위탁사무와 관련있는 분야의 관계전문가를 도지사가 위촉한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주관 실·과·소장이 된다.

제8조(위탁기간)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, 재계약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도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